

청주교육대학교 대학간 협정에 의한 교류교수규정

제정 : 2007.5.2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타 대학과의 교류협약에 의한 교류교수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류교수라 함은 국내외 대학과의 교수교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 학기 이상 협정대학에 파견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 3 조 (자격) 교류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교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교수 기간이 종료되고 한 학기가 경과한 자.

제 4 조 (선정절차) 교류교수의 선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정책개발원은 해당 대학과의 교수교류에 관한 협정에 의거 교류교수선정 일정을 공지한다.
2. 교류교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과 교수 전원 동의를 얻어 교류교수신청서(별지 1호)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정책개발원에 제출한다.
3. 총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협정 대학의 동의를 거쳐 최종 교류교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 5 조 (선정인원) ① 교류교수의 선정인원은 교수 현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한 학과의 교류교수의 총 인원은 연구교수의 수를 포함하여, 학과 재직교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학과별 현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4명으로 본다.

③ 학과간의 1:1 상호교류일 경우 ②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기간) 교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학기 단위로 시행한다.

제 7 조 (복무) ① 교류교수는 파견된 목적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교류교수는 파견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강의담당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류교수가 파견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류교수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교류교수는 파견종료 직후 한 학기 이상 본교에서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

제 9 조 (처우) 교류교수는 당해 교원의 신분 및 제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10 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의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 5. 22 규칙 제118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